



제 326 호

## 법인 설립 허가증

1. 법인명: 사단법인 위스타트
2. 소재지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-9 (서소문로 100)
3. 대표자  
가. 성명: 김수길  
나. 생년월일: 1954년 7월 5일  
다.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12길 70, 101호
4. 사업내용: 빈곤 및 소외된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및 건강을 지원
5. 허가조건: 이면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21년 4월 6일

(최초설립허가일 : 2007.2.26.)

보건복지부장관



## 준 수 사 항

1.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-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 -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 -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 - 나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다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## 변 경 사 항

번호	변경일	내 용			확인
	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1	2007.2.26	설립허가	-	-	허가증 대호 326
2	2011.5.13	대표자	김 석 산	송 필 호	허가증 대호 326
3	2013.4.4	법인 소재지	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	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-9번지 (서소문로 100)	허가증 대호 326
4	2015.6.12	법인 명칭	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	사단법인 위스타트	허가증 대호 326
5	2021.4.6	대표자	송 필 호	김 수 길	